

第5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1月22日(水) 11時 01分

장소: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안)
2. 서울特別市鍾路區 '95年度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

審査된 案件

1. '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안)(區廳長 提出)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 '95年度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委員會 提出)25面

(11時01分 開議)

○委員長 玄壽漢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鍾路區會議 臨時會 제1차 市民行政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된 업무중에도 參席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오늘 追加更正豫算(안)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議案係長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洪柱結 議案係長 洪柱結입니다. 제54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제2차 市民行政委員會 會議는 地方自治法 제53조의 規程에 의거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事項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11월 13일 鍾路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16일 議長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금년도 定期會 기간 중 심의할 '95년도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건이 되겠습니다.

以上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안)(鍾路區廳

長 提議)

(11時 03分)

○委員長 玄壽漢 議事日程 제1항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總務局, 市民局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총무국장 오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현수한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무국 추경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청공원내에 추진중인 테니스장 대상지 지하부분에 묻혀 있는 하수로 암거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테니스장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학교에 29면, 일반기업체 7개소에 12면, 총 20개소에 41면의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을 모든 일반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사설 테니스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테니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임야, 상가, 그리고 주택으로 형성된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테니스장

을 설치할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삼청공원 내에 터를 잡아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삼청공원내 테니스장 하수로 암거 공사는 길이 95m, 높이 2m, 넓이 2.5m의 암거 교체 공사로서, 기하 설치된 암거의 상태는 내부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의 노출 및 부식, 균열의 발생으로 누수 발생, 일부 지역의 처짐 등 전문가의 판단으로 중기로 흠을 다지기에는 위험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하수도 암거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의 소요예산이 1억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로구민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우리구 관내 개방할 수 있는 유일한 테니스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吳炳漢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심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市民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현수한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민국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창신1동 어린이집의 지하굴착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신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94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에 신축공사 진행중인 사업으로 창신1동 403번지 17호 외 2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아동 130여명을 보육할 수 있는 큰 시설로써 도급비 4억원인 공사입니다.

지하굴착중 지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고 토질이 연약한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 흙막이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지질조사를 한 결과 공사지역이 청계천을 매립하여 성토한 지역으로서 지반보강 및 공사진행을 위하여 [C.I.P+차우그라우팅] 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9

천2백만원의 증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년내 지하굴착 및 기반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인근지역 어린이들의 훌륭한 보금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金賢植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제안설명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5년 11월 13일 鍾路區廳長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계 1차 추경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액이 1,072억7,900만원에서 그전의 추경에서 간주처리분 9,200만원을 포함해서 25억2,3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확정예산은 1,09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전 재원으로써 24억3,100만원, 간주처리분, 시비보조금이 9,200만원 이것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투자재원으로만 24억3,100만원이 전액 계상이 되었고 특별회계 진료비 보조에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市民行政委員會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市民行政 소관은 투자재원으로써 1억9,100만원, 진료비 보전액 특별회계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은 삼청공원 테니스장 하수로공사에 기정예산 1억에서 금회 추경 1억 해서 총 2억이 되었고 창신1동 어린이 집 추가공사비로 9,100만원이 추경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조정교부금 배정 근거 규정에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시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조례는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두었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조례 제4조입니다. 1항, 서울특별시는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당해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은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예산 규모를 보면 취득세가 7,300억, 등록세가 9,400억 해서 1조6,000억 가량을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제하면 되겠고 이중 50%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약 9,00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항,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특별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00억이면 약 350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5조 시장은 매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동조례 제6조 보통교부금의 교부입니다. 보통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10조 특별교부금의 교부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2. 우리 자치구의 청사, 공공복지시설의 긴급한 보수나 복구가 필요할 때 3. 기타 재정수입의 감소요인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정재원은 전액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도 전액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실행 예산이라 사료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용도가 지정되어 배치되는 시비보조금으로 이는 예산 총칙 규정에 의

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써 사업비의 추가 소요액의 적정여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95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基本方向

주민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에 전액 반영

追更財源

○ '95년도 보통교부금 추가배분 가내시
歲出豫算編成方向

○ 事業豫算

- 주민 대규모 숙원사업 해결
- 당초 예산 미반영된 시급한 사업비 확보

(다음 「페이지」에 계속)

總豫算規模(案)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액 (A=B+C)	당초예산액 (B)	추 가 경 정			증 가 율 (C/B)
			소 계 (C=D+E)	간주처리 (D)	금회추경 (E)	
합 계	109,802	107,279	2,523	92	2,431	2.3
일 반 회 계	96,363	93,932	2,431	—	2,431	2.6
특 별 회 계	13,439	13,347	92	92	—	0.7
의료보호	1,017	925	92	92	—	10.0
새 마을	165	165	—	—	—	
주 차 장	12,257	12,257		—	—	

追加更正豫算財源配分(案)

追更財源總括

(단위: 백만원)

구 분	추 경 재 원	일반조정교부금	보 조 금	세외수입조정 (사업외수입)	비 고
계	2,523	2,431	92	0	
일 반 회 계	2,431	2,431	0	0	
특 별 회 계	92	0	92	0	
의료보호	92	0	92	0	

一般會計

(歲入)

(단위: 백만원)

합 계	일반조정교부금	보 조 금	세 외 수 입	비 고
2,431	2,431	0	0	

(歲出)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 자 재 원
		소 계	인 건 비	일반경상비	
금 액	2,431	0	0	0	2,431
구 성 비	100%	0	0	0	100%

特別會計

(단위: 백만원)

區 分	歲 入		歲 出	
의 료 보 호	합 계	92	합 계	92
	시 비 보조금	92	진 료 비 보 전	92

(다음 「페이지」에 계속)

投資事業總括(案)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야별	예산액		'95기정 편성액		'95추경 편성액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10	25,127	105	22,696	5	2,431	
도 로 · 기 전	39	14,519	36	12,279	3	2,240	
하 수	9	1,592	9	1,592	0	0	
공 원 녹 지	20	1,249	20	1,249			
복 지	12	2,548	11	2,457	1	91	
영 선	12	2,994	12	2,994	0	0	
청 소	3	328	3	328			
기 타	산 업	3	750	3	750		
	체 육	7	304	6	204	1	100
	교 통	2	113	2	113		
	기 타	3	730	3	730		

投資事業分野別調整(案)

(단위 : 백만원)

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총소요	기투자액		금회추경	장래소요	비 고
				'94이전	'95당초			
道路	1) 필운동~옥인동 도로 개설공사 - B=6~8m→12~15m - L=1,140m	'94. 5~ 2000년	18,724	1,224	800 (800)	1,190 (1,190)	15,510	
	2) 덕성여대~와룡동 150 번지간 도로개설공사 - B=4→6m - L=320m	'95. 3~ '96.12	2,100		600 (600)	700 (700)	800	
	3) 안국동 104번지 도로개설공사 - B=4m - L=170m	'95. 3~ '96.12	630		200 (200)	350 (350)	80	
生活 體育	1) 삼청공원 테니스장 하 수로 암거공사	'95. 3~ '96.12	200		100	100	0	
福祉	1) 창신1동 어린이집 설계 변경 추가공사비	'95. 3~ '96.12	1,006		915	91	0	

()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계속)

'95 特別會計 看倣處理 豫算編成 現況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수별	간주처리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간주처리	산출기초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제4회	'95. 11. 1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1,016,113	924,248	91,865	1) 진료비 보전 91,865,000원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수별	간주처리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간주처리	산출기초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제4회	'95. 11. 1	의료 시혜 사업비	의료 시혜 사업비	의료 보호비	의료 보호비	일반 운영비	1,016,113	924,248	91,865	12) 기타운영비 의료보호부족 진료비 보전 91,865,000원

예산총칙

제 1 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명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109,802,109	2,733,056
일반회계	96,363,490	2,733,056
특별회계	13,438,619	—
의료보호기금	1,016,113	—
새마을	165,448	—
주차장	12,257,058	—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3,054천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1,154,04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기본급, 정액수당, 민간이전 경비
2.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3.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배상금
4. 차입금의 원리금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5 조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합 계		96,363,490	100.0	93,932,207	100.0	2,431,283
세입	지방세수입	42,328,167	43.9	42,328,167	45.1	0
	세외수입	29,841,489	31.0	29,841,489	31.8	0
	경상적세외수입	14,719,718	15.3	14,719,718	15.7	0
	임시적세외수입	15,121,771	15.7	15,121,771	16.1	0
	조정교부금	18,663,283	19.4	16,232,000	17.3	2,431,283
	보조금	2,889,981	3.0	2,889,981	3.1	0
	국고보조금	1,535,680	1.6	1,535,680	1.6	0
	시비보조금	1,354,301	1.4	1,354,301	1.4	0
지정채원		2,640,570	2.7	2,640,570	2.8	0
세출	인건비	0		0		0
	물건비	0		0		0
	이전경비	0		0		0
	자본지출	2,431,283	100.0	0		2,431,283
	융자및출자	0		0		0
	보전채원	0		0		0
	내부거래	0		0		0
	예비비기타	0		0		0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합	계	96,363,490	93,932,207	2,431,283
100	지방세수입	42,328,167	42,328,167	0
200	세외수입	29,841,489	29,841,489	0
210	경상적세외수입	14,719,718	14,719,718	0
211	재산임대수입	17,451	17,451	0
212	사용료수입	2,091,253	2,091,253	0
213	수수료수입	4,607,827	4,607,827	0
215	징수교부금	7,653,187	7,653,187	0
216	이자수입	350,000	350,000	0
211	임시적세외수입	15,121,771	15,121,771	0
221	순세계잉여금	13,167,406	13,167,406	0
223	융자금회수수입	13,000	13,000	0
224	잡수입	1,691,365	1,691,365	0
225	과년도수입	250,000	250,000	0
500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510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600	보조금	2,889,981	2,889,981	0
610	국고보조금	1,535,680	1,535,680	0
620	시비보조금	1,354,301	1,354,301	0
700	지정재원	2,640,570	2,640,570	0
720	재산매각수입	822,217	822,217	0
730	보조금사용잔액	120,805	120,805	0
740	부담금	1,697,548	1,697,548	0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합	계	96,363,490	102.6	93,932,207	100.0	2,431,283
1000	의회비	1,246,622	1.3	1,246,622	1.3	0
	1200 의회운영비	1,246,622	1.3	1,246,622	1.3	0
2000	일반행정비	47,071,889	48.8	46,971,889	50.0	100,000
	2100 기획관리비	20,501,487	21.3	20,501,487	21.8	0
	2200 공보비	689,496	0.7	689,496	0.7	0
	2300 내무행정비	21,206,433	22.0	21,106,433	22.5	100,000
	2400 재무행정비	4,674,473	4.9	4,674,473	5.0	0
3000	사회복지비	25,805,549	26.8	25,714,266	27.4	91,283
	3100 복지사업비	6,392,285	6.6	6,301,002	6.7	91,283
	3200 보건위생비	2,613,511	2.7	2,613,511	2.8	0
	3300 공원녹지비	2,718,969	2.8	2,718,969	2.9	0
	3400 청소사업비	14,080,784	14.6	14,080,784	15.0	0
4000	산업경제비	774,416	0.8	774,416	0.8	0
	4300 지역경제비	774,416	0.8	774,416	0.8	0
5000	지역개발비	19,818,316	20.6	17,578,316	18.7	2,240,000
	5100 도시개발비	1,133,054	1.2	1,133,054	1.2	0
	5200 건설사업비	16,634,445	17.3	14,394,445	15.3	2,240,000
	5300 치수하수사업비	2,050,817	2.1	2,050,817	2.2	0
7000	민방위비	223,643	0.2	223,653	0.2	0
	7100 민방위비	223,643	0.2	223,643	0.2	0
8000	지원 및 기타경비	1,423,055	1.5	1,423,055	1.5	0
	8100 전출금	50,000	0.1	50,000	0.1	0
	8400 예비비	1,373,055	1.4	1,373,055	1.5	0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일반회계세입목별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액	비 교 증 △ 감
장·관·항	목			
합	계	96,363,490	93,932,207	2,431,283
100	지방세수입	42,328,167	42,328,167	0
110	지방세	42,328,167	42,328,167	0
111	보통세	35,640,969	35,649,969	0
111-03	면허세	1,935,900	1,935,900	0
111-05	재산세	6,452,844	6,452,844	0
111-11	종합토지세	27,252,225	27,252,225	0
112	목적세	6,192,000	6,192,000	0
112-03	사업소세	6,192,000	6,192,000	0
113	과년도수입	495,198	495,198	0
113-01	과년도지방세수입	495,198	495,198	0
200	세외수입	29,841,489	29,841,489	0
210	경상적세외수입	14,719,718	14,719,718	0
211	재산임대수입	17,451	17,451	0
211-01	국유재산임대료	4,075	4,075	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3,376	13,376	0
212	사용료수입	2,091,253	2,091,252	0
212-01	도로사용료	1,376,876	1,376,876	0
212-02	하천사용료	529,660	529,660	0
212-07	기타사용료	184,717	184,717	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액	비 교 증 △ 감
장·관·항	목			
	213			
	수수료수입	4,607,827	4,607,827	0
	213-01			
	관공업수입	114,851	114,851	0
	213-02			
	중지수입	724,877	724,877	0
	213-03			
	폐기물수집수수료	3,768,099	3,768,099	0
	215			
	징수교부금	7,653,187	7,653,187	0
	215-01			
	시세징수교부금수입	3,332,000	3,332,000	0
	215-02			
	사용료징수교부금	602,100	602,100	0
	215-03			
	기타징수교부금수입	3,719,087	3,719,087	0
	216			
	이자수입	350,000	350,000	0
	216-01			
	이자수입	350,000	350,00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15,121,771	15,121,771	0
	221			
	순세계잉여금	13,167,406	13,167,406	0
	221-01			
	순세계잉여금	13,167,406	13,167,406	0
	223			
	융자금회수수입	13,000	13,000	0
	223-01			
	융자금회수수입	13,000	13,000	0
	224			
	잡수입	1,691,365	1,691,365	0
	224-01			
	불용품매각대	2,000	2,000	0
	224-02			
	변상금	102,261	102,261	0
	224-03			
	위약금	7,000	7,000	0
	224-04			
	과태료수입	1,104,854	1,104,854	0
	224-05			
	체납처분수입	14,000	14,000	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장·관·항	목				
		224-07 기타잡수입	461,250	461,250	0
		225 과년도수입	250,000	250,000	0
		225-01 과년도수입	250,000	250,000	0
		500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510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511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511-01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600 보조금	2,889,981	2,889,981	0
		610 국고보조금	1,535,680	1,535,680	0
		611 일반행정비보조	176,898	176,898	0
		611-01 일반행정비보조	176,898	176,898	0
		612 일반행정비보조	895,332	895,332	0
		612-01 일반행정비보조	895,332	895,332	0
		615 문화 및 체육비보조	7,614	7,614	0
		615-01 문화민체육비보조	7,614	7,614	0
		616 민방위보조	2,242	2,242	0
		616-01 민방위보조	2,242	2,242	0
		618 병사비교부금	453,594	453,594	0
		618-01 병사비교부금	453,594	453,594	0
		620 시비보조금	1,354,301	1,354,301	0
		621 일반행정비보조	128,601	128,601	0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액	비 증 △ 감
장·관·항	목					
		621-01 일반행정비보조		128,601	128,601	0
		622 사회복지비보조		1,225,632	1,225,632	0
		622-01 사회복지비보조		1,225,632	1,225,632	0
		626 민방위보조		68	68	0
		626-01 민방위보조		68	68	0
		700 지정재원			2,640,570	2,640,570
		720 재산매각수입		822,217	822,217	0
		721 국유재산매각수입		78,282	78,282	0
		7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78,282	78,282	0
		722 공유재산매각수입		743,935	743,935	0
		722-01 공유재산매각수입		743,935	743,935	0
		730 보조금사용잔액		120,805	120,805	0
		73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5,582	45,582	0
		731-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5,582	45,582	0
		732 시비보조금사용잔액		75,223	75,223	0
		732-01 시비보조금사용잔액		75,223	75,223	0
		750 부담금		1,697,548	1,697,548	0
		751 부담금		1,697,548	1,697,548	0
		751-02 일반부담금		1,697,548	1,697,548	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장·관·항	목			
합 계		96,363,490	93,932,207	2,431,283
500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510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511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511-01 조정교부금		18,663,283	16,232,000	2,431,283

장 : (500)조정교부금

관 : (510)조정교부금

(단위 : 원)

산출기초

○ 보통교부금(추가내시) 2,431,283,000원 = 2,431,283,000

항 : (511)조정교부금

목 : (51101)조정교부금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합	계	96,363,490	93,932,207	2,431,283
20000				
일반행정비		47,071,889	46,971,889	100,000
23000				
내무행정비		21,206,433	21,106,433	100,000
23100				
내무행정		7,633,035	7,533,035	100,000
23104				
생활체육		698,030	598,030	100,000
1. 생활체육관리		698,030	598,030	100,000
	404 시설비	304,000	204,000	100,000
30000				
사회복지비		25,805,549	25,714,266	91,283
31000				
복지사업비		6,392,285	6,301,002	91,283
31100				
일반사회복지		6,392,285	6,301,002	91,283
31102				
가정복지		4,843,747	4,752,464	91,283
1. 노인유아복지		4,552,385	4,461,102	91,283
	404 시설비	1,005,983	914,700	91,283
50000				
지역개발비		19,818,316	17,578,316	2,240,000
52000				
건설사업비		16,634,445	14,394,445	2,240,000
52100				
건설행정		16,634,445	14,394,445	2,240,000
52102				
도로건설		12,842,368	10,602,368	2,240,000
1. 도로건설		12,842,368	10,602,368	2,240,000
	404 시설비	12,516,833	10,276,833	2,240,000

(단위: 원)

산	출	기	초
○ 삼척공원 테니스장 하수로 암거공사	100,000,000원	=	100,000,000
○ 창신1동 어린이집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91,283,000원	=	91,283,000
○ 필운동~옥인동 도로개설			2,240,000,000
			1,190,000,000

(단위 : 원)

산	출	기	초
• 보상비	1,190,000,000원	=	1,190,000,000
○ 덕성여대~와룡동 150 도로개설			700,000,000
• 보상비	700,000,000원	=	700,000,000
○ 안국동 104 도로개설			350,000,000
• 보상비	350,000,000	=	350,000,000

일반회계세출목별조서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액	비 증 △ 감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합 계				96,363,490	93,932,207	2,431,283	
20000							
일반행정비				47,071,889	46,971,889	100,000	
	23000						
	내무행정비			21,206,433	21,106,433	100,000	
		23100					
		내무행정		7,633,035	7,533,035	100,000	
			23104				
			생활체육		698,030	598,030	100,000
				1. 생활체육관리		698,030	598,030
	404						
시설비			304,000	204,000	100,000		
30000							
사회복지비				25,805,549	25,714,266	91,283	
	31000						
	복지사업비			6,392,285	6,301,002	91,283	
		31100					
		일반사회복지		6,392,285	6,301,002	91,283	
			31102				
			가정복지		4,843,747	4,752,464	91,283
				1. 노인유아복지		4,552,385	4,461,102
	404						
시설비			1,005,983	914,700	91,283		
50000							
지역개발비				19,818,316	17,578,316	2,240,000	
	52000						
	건설사업비			16,634,445	14,394,445	2,240,000	
		52100					
		건설행정		16,634,445	14,394,445	2,240,000	
			52102				
			도로건설		12,842,368	10,602,368	2,240,000
				1. 도로건설		12,842,368	10,602,368
	404						
시설비			12,516,833	10,276,833	2,240,000		

○委員長 玄壽漢 :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총괄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會議規則 제52조 제2항의 規程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朴鍾植委員! 질의하세요.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예산안이 1억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1억이 딱 예산이 된거지요?

○總務局長 吳炳漢 이것은 우리 토목분야에서 공원녹지과의 토목직들이 간이 설계를 해서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吳錦南委員! 질의하세요.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학교 부지로 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명목으로 있는데 공공으로써 테니스장이 없어서 삼청동 공원에 하나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걸 시작할 때 상세한 설계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이중으로 추가 예산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했으면 예산의 낭비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쪽에는 지반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공사든지 보면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암반이 나오니까 얼마를 추가해야 한다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공사가 많겠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 예산 문제도 상당히 감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좋으신 지적입니다. 당초 우리가 충분한 지반조사를 했더라면 그러한 추가 경정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걸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뛰가지고 용역설계회사에서 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하수암거가 심하게 부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

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丁昌熙委員! 질의하세요.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市民局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신1동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일대가 청계천 주변으로 흙을 메꾸고서 한 토질이기 때문에 일반공법으로는 안되고 특수공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그렇게 수맥이 흘러 가지고 굉장히 파기가 어렵고 또 공사 후에도 지하 부근에 물이 많이 있게 되면 어지간하게 방수공사를 탄탄히 하기 전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차제에 지하 부근에 대한 설계를 지상 부근으로 대치시켜서 하는 것이 추후로 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局長님의견은 어떻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창신1동 어린이집 학생수를 한 13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지하 시설을 지상으로 올릴 때 현재 대지가 한 83.9평이고 총건물 건평이 150여평입니다. 그럴 경우에 적정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CIP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지하수가 추가로 지하수 분출은 나지 않는다 기술파트에서 다시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체 검사를 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본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지하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70여평 중에서 전체 바닥 면적을 팔적에 70여평이 다 고루고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70여평 중의 일부가 도저히 더파기를 하는데 물이 쏟아져서 더이상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지금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73.9평 중에서 대지면적 중에 지하수가 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丁昌熙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금 지하에 70평 중에서 20, 30평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지하부분의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피해 가지고 지하 부분은 건축을 계속해서 하고 그 지하에서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3층 이상으로 해서 증축을 하면 지금 이런 1억이란 돈의 예산 집행 없이도 충분히 1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수를 확보하면 되

는거지 꼭 지금 문제가 있는 20, 30평 수맥이 나오는 그걸 막기 위해서 9,200만원이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우리 구에서 자체 감사실을 통해서 일선 감사를 보름 정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저희들이 얻은 결과 이것이 지질 자체가 아주 연약한 점토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만 해가지고 그 외의 그 부족한 면적을 지상에 올리는 것 보다는 현재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한 1억2,100만원이 듭니다만 저희들 1억2,100만원 보다는 앞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갈 경우 좀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한 9,200만원을 들여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더 잘하려면 사실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구재정이나 여건상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러한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局長님 설명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물이 흘러가다가 돌이 있으면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집을 짓다가 지하를 파는데 그 부분 한쪽 구석에 문제가 있다고치면 10평이나 15평이나 그 부분은 포기를 해버리고 그 부분만큼은 4층으로 증축을 하든지 3층이 일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3층 일부를 더 해가지고 전체 평수로 하든지 해서 건축면적이 130평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평수가 확보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 놀이방이 지하에 꼭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4층에 일부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는거고 창고가 있을 수도 있는거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9,200만원이란 예산이 지하 부분에 대한 굴착의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소요금액이 집행이 안되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 지하에 수맥을 탄탄하게 방치를 해서 향후에 지하 부분의 침수를 완전하게 해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수맥이란 것은 언제 다시 돌아서 다시 옆으로 빠져나올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견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局長님이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진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丁委員님 말씀대로 일부만 해도 좋은지 전반적인 토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술진들이 만약에 지금 丁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책임을 못지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런 공법을 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건축 기술상 부득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전체 토지면적이 70여 평이 조금 넘는데 지금 지하1층하고 지상3층하고 해서 150평이면 각 층당 40평이 조금 안됩니다. 그러면 70평 중에서 어차피 30여 평은 떼어서 공터가 있고 용적을 자체가 60% 선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지하 건축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되풀이됩니다라는 이러한 설계 변경은 전문기술진들이, 또 자체 감사실의 오랜 숙의 끝에 이렇게 안할 경우에는 앞으로 준공해서라도 분출액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불 이러한 공법이 다시 채택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기술진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예. 알겠습니다.

○丁昌熙委員 9,200만원이 지금 현재 낙찰업체가 시공하고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소요예산을 뽑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개 이상의 시방설계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이것을 저희 구에서 자체 건축파트인 우리 건축과에서 종합적인 지질조사를 해서 현재 이 공법에 의해서 설계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우리 종로구 건축과에는 자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공법으로 해서 시공하고 설계하고 공사비를 책

정해서 어느 정도 산정해 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 직원이 산출한 건지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9,200만원이 편성되면 전액이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공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한 특수공법의 지원금으로 공사비로 전액이 지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번에 공사 총액에 대해서 낙찰 비중을 따진 비율을 적용해서 9,200만원 중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이것은 예산 규정에 준용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委員長님! 서류를 지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잠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玄壽漢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검증하시고 싶으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고 이후에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丁昌熙委員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玄壽漢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哲柱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신1동 어린이집 설계변경 추가공사비가 9,128만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비는 얼마이고 실지 추가공사비는 얼마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설계비나 낙찰률이나 공사, 직접 현장의 세부사항은 서류를 가져오는 대로 바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설계가 변경된 날짜와 추가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계약 체결한 날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계약한 것은 금년도 8월 22일 날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가 추가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 분출로 굴착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安哲柱委員 지금 현재 공사 진척 상황은 어떻

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현재 지하 굴착 중에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셨던 '96년도 상반기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완공하시리라'고 보십니까? 공사 진척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지하 굴착 공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市民局長 金賢植 가능하겠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수공사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민국 특히 가정복지과 안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인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가정복지과 안에는 이 전문직종들이 있나요?

○市民局長 金賢植 지금은 없습니다.

○安哲柱委員 본 위원의 견해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직이 꼭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安委員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구의 인력 구조상 이런 전문직이 직접 기능부서인 가정복지과에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각종 기술파트인 건축과나 토목과에 의뢰해서 토목과나 건축과 기술파트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체에서 공사를 직접 할 경우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국에 요청도 했습니다. 마는 현재 구 자체에서 인력 수습상 불가하고 그래서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구의 건축과에 영선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예, 朴文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국장님께 질문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 22일 착공하셨다고 했죠?

○市民局長 金賢植 계약이 8월 22일이고 착공은

계약서를 하고 8월 24일 착공했습니다.

○**朴文培委員** 준공 계획은 언제 완공될 계획입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원래 8월 22일 계약해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공사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설계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주소와 연락처를 자료로 주시고 혹시 대표자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 130여 명의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몇 평, 지하 몇 평 해서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 건물입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업체는 상호종합건설입니다. 다시금 설명드리면 대지가 243.3㎡이고 건물이 512.82㎡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층이 약 44.3평, 1층이 33평, 2층이 35.4평, 3층이 33.2평, 옥탑층이 9.5평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주로 주방, 다용도실과 보육실로 하고, 1층은 보육실과 사무실로 하고 2, 3층은 보육실로 하고 그리고 옥탑층은 옥탑 및 물탱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건축회사는 상호종합건축주식회사로 현재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입니다. 이상입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도급비 4억원이 공사비로 기존 계약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억원 공사라고 되어 있죠? 도급비. 추가로 9,200만원이 추가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민국장님!

○**市民局長 金賢植** 현재 9,200만원 정액 금액은 1만 9,282원입니다. 설계 금액이 그렇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주변에 이러한 규모의 상당히 큰 건물은 아닌데, 이 지역에 주변에 이러한 건물들이 없는 지역입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朴文培委員** 건물이 없이 지질조사라든가 설계 업체로부터 어떠한 이러한 물맥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소위 도급계약 당시에 이렇게 사전에 언급은 없었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없었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막연하게 물이 새어나온다 해가지고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을 요구하는데 그 물이 새어나오는 어떠한 근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市民局長 金賢植** 저희 구에 아까와 같이 우리 감사실이나 건축과에서 조사를 할 때 이것이 다량으로 지하수가 나타나는 곳이고 또 토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초의 설계 때 이러한 흠박이 공법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말이죠, 이 정도의 건물에 소위 어느 정도가 물이 유출되는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丁委員님께서 애기한 것처럼 어떠한 물이 나오는 현장의 사진이라고도 자료가 있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지금 사진은 없습니다라는 관계자료 서류는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막연하게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회사의 농간이라고 할까 어떠한 거기에 소위 관계공무원들이 응해서 적당하게 이게 성토할 수 있는, 보강해서 지을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사실 인정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요청, 추가 요구가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인 확정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이것을 인정받는 이러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소요한다는 내용은 구에서 사실은 회사의 의견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조속한 공사 완공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玄壽漢** 질의를 해주실 때 다른 委員이 질의하신 것을 중복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무래도 단축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삼청공원 테니스장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추경을 1억으로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鄭泰淳委員님 질의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테니스장 4면만 설치하는

금액으로 해서 1억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삼청공원으로 선정하고 설계 시공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 시공하는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부분에 지하에 묻혀 있는 암거가 하수관로가 물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도 돌출되고 부식되어서 노면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장비가 들어가면 암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를 이번 기회에 새로 교체하자, 그러면 우리 수방대책도 되고 그래서 1억원 추가예산은 테니스장에 직접 대는 예산이 아니라 그 테니스장을 지나가는 하수관로를 다시 새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러면 애초 설치 장소가 삼청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1억이 기정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까? 그 장소입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장소는 원래 사직공원이었는데 테니스장을 건설할 때는 공법이 똑같습니다. 기층에 몇센티미터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방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면당 얼마 해서 공정가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1억원을 반영한 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암거까지 하다보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설계비가 나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2억원이었는데 도급비가 1억 6,300만원 관급자재비가 3,200만원 수집, 운반 및 수수료가 370만원으로 2억원이 용역 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러면 구민들이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서 활용하는 데는, 지금 종로구에서는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거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이.

○總務局長 吳炳漢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관계자들만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우리가 테니스 동호인들이 시간당 5천원씩 요금을 내고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물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애호가들은 그 장소를 알겠지만 앞으로 추후 테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입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생활체육을 통해서 생활체육 연합회라든가 테니스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고 각 동네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테니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구민들보다는 많은 동호인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우리가 이런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에 테니스 경기를 할 때 사실상 4면씩 확보된 면이 없어서 우리가 중구청에 가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장을 건설하면 우리 지역사회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鄭泰淳委員 앞으로 폭넓게 주민들이 좀더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總務局長,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總務局長님! 市民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95年度 市民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事計劃書作成의 件(市民行政委員長提出)

(11時 58分)

○委員長 玄壽漢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 鍾路區 '95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事 計劃書 作成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행정위원회 안을 확정을 하고 1995년 11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감사 실시 3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 幹事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 幹事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아파가지고 설명이 미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종로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委員長을 玄壽漢 委員長으로 하고 幹事는 洪起瑞議員이 幹事, 議員으로서는 洪承台議員, 安哲柱議員, 吳錦南議員, 千相旭議員, 沈載得議員, 鄭泰淳議員, 丁昌熙議員, 朴鍾植議員, 朴文培議員 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감사 일시와 감사 대상기관 감사 장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현지확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 및 관계관의 출석 증언 등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개회 및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소관별 국별 간부 소개 및 선서, 업무현황 청취 보고 및 질의 답변,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 청취,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하겠으며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에는 朴鍾植議員, 羅在岩議員, 부암동, 평창동에는 丁昌熙議員과 金以煥議員, 삼청동, 세

종로동에는 沈載得議員과 康來奎議員, 무악동, 교남동에는 朴文培議員과 金正大議員, 가회동, 종로1·2가동에는 千相旭議員과 宣相善議員, 종로3·4가동, 종로5·6가동에는 洪起瑞議員과 李萬魯議員, 이화동, 혜화동에는 洪承台議員과 李炳文議員, 명륜3가동과 창신1동에는 玄壽漢議員과 吳錦南議員, 창신2동과 창신3동에는 鄭泰淳議員과 李炯述議員, 승인1동과 승인2동에는 安哲柱議員과 玄孝善議員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 방법은 재선대 초선 의원으로 1개 반을 하였으며, 동부 및 서부로 구분하고 위원회별로 배정을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감사의 目的

- 종로구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행정상 미비, 보안사항 등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 유도

2. 監査期間

1995. 11. 27~12. 3(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민국
- 종로구 보건소
- 각 동사무소(21개 동)

4. 監査班 編成

- 위 원 장 : 현수환
- 간 사 : 홍기서
- 감사위원 : 안철주, 오금남, 천상옥, 심재득, 박문배, 박종식, 정창희, 홍승태, 정태순

(다음 「페이지」에 계속)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위 원 명
1995. 11. 27(월) ~11. 28(화)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현장확인
1995. 11. 29(수)	문화공보실 감 사 실 시민봉사실 보 건 소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1. 30(목)	총 무 과 기 획 예 산 과 국 민 운 동 지 원 과 생 활 체 육 과 민 방 위 과 여 권 과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2. 1(금)	시 민 국 사 회 복 지 과 가 정 복 지 과 위 생 과 산 업 과 환 경 과 청 소 과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2. 2(토)	재 무 국 재 무 과 세 무 관 리 과 부 과 과 지 적 과	종 로 구 청 (기획상황실)	
1995. 12. 3(일)	시민행정위원회소관	시민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결 과 보 고 서 채 택

6. 監査方法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확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나. 주요 감사내용

- 1995년도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사항
- 문화행사·문화재관리사항 및 자체감사활동 사항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행정지도 관련사항
- 국민운동지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업무 추진사항
- 1995년도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

항과 공시지가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지적처리 및 민원 사항
- 저소득시민의 보호 및 가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항
-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상공, 연료, 물가와 환경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및 분뇨의 처리 및 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995년도 방역사업 등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 및 민원처리사항

다. 감사진행순서

- 개회 선포 및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소관실, 국별 간부 소개 및 선서
- 업무현황 청취

- 보고 및 질의 답변
 -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 청취
 - 감사종료 선언
- 라.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 보고 요구
 - 보고사항 : 실, 국별 업무현황
 - 보고일시 : 1995. 11. 27~12. 3
(감사일정 참조)
 - 보고장소 : 감사장
 - 서류(자료)제출요구

-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 :
별도 목록에 의함
- 제출일시 : 1995. 11. 25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 제출부수 : 30부
- 현지확인 사항
 - 현지확인장소 : 각 동사무소
 - 현지확인일시 : 1995.11.27~11.28
 - 현지확인반 편성

반별	동	명	위	원	명	편	성	기	준
1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박종식	위원, 나재암	위원				1. 재선대 초선 2. 동부 및 서부 3. 위원회별 안배
2	부암동, 평창동		정창희	위원, 김이환	위원				
3	삼청동, 세종로동		심재득	위원, 강래규	위원				
4	무악동, 교남동		박문배	위원, 김정대	위원				
5	가회동, 종로1, 2		천상욱	위원, 선상선	위원				
6	종로3, 4, 종로5, 6		홍기서	위원, 이만로	위원				
7	이화동, 혜화동		홍승태	위원, 이병문	위원				
8	명륜3가, 창신1동		현수한	위원, 오금남	위원				
9	창신2동, 창신3동		정태순	위원, 이형술	위원				
10	송인1동, 송인2동		안철주	위원, 현효선	위원				

- 현지확인사항 : 구청업무관련사항 및 주민등록관리와 민원처리실태 등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일시 : 1995.11.30~12.3(감사일정 참조)
 - 출석공무원 : 소관 국장 및 실·과장
 - 출석장소 : 감사장

7. 監査의 限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 금지
-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에 따른 취득사항 누설 금지

8. 行政事項

가. 보고·서류의 제출 요구

- 보고·서류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 확정 후 각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확정

- 위원장은 의결을 거친 보고·서류의 제출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 요구(늦어도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

나.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도록 통지
-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함.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채택
-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결과(감사반, 대상기관별 일시·장소·방법 등 기타)

- 주요 감사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 중요 근거서류

○委員長 玄壽漢 洪起瑞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추가 발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발의해 주시면 간사와 협의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承台委員 질의하십시오.

○洪承台委員 여기 날짜 배정은 일요일까지 7일간이니가 잘 되어 있는데 구청 기획상황실에서만 합니까? 여기 소회의실에서 한분한분 과장을 불러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시간은 되어 있는지 오후나, 기획상황실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어떠한 질의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과장이면 과장을 불러가지고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의 배려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玄壽漢 그래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여기 소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적어도 20내지 30명이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획상황실을 잡았고, 대개 오전 중에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서류 제출이라든가 확인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기획상황실에서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혹시 議員님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밤늦게 혹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이번 감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사항은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 감사는 개별감사는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玄壽漢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 자리가 좁아가지고 도서건설위원회에 여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承台委員 질의하십시오.

○洪承台委員 그러면 오전에는 우기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속기록에 남겨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점심식사를 하고 개인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전 오후로 배정을 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오전 중에는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서류 제출해서 개인이 과별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때는 저녁 이후에 다시 질의를 가지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哲柱委員 질의하십시오.

○安哲柱委員 행정사무감사 의원 편성기준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여기 편성 기준에 보면 재선대 초선, 동부 및 서부, 위원회별 안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부분에서는 두 분 다 재선 의원으로 되어 있고, 반별 4반에서는 두 분 다 초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반과 10반은 의원들이 전부 다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玄壽漢 지금 대충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전체 議員님들 명단을 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점은 재선대 초선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이 한분씩 겹쳐 들어가야 나중에 건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토론 中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그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散會)

○出席委員 10名

玄 壽 漢	洪 起 瑞	安 哲 柱
吳 錦 南	千 相 旭	朴 文 培
朴 鍾 植	丁 昌 熙	洪 承 台
鄭 泰 淳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

○關係公務員

總務局長	吳 炳 漢
市民局長	金 賢 植
生活體育課長	李 東 明
家庭福祉課長	李 恩 淑

